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가단5322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4. 11. 2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3. 7. 12. 접수 제9694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판사김한울

별지